



보험급여의 청구절차

부정이득의 징수, 평균임금의 산정, 산재적용근로자, 산재보상과 다른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1. 부정이득의 징수

가. 개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와 허위신고 또는 허위증명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산재보험법 제53조)

나. 징수금액

- ① 수령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사업주의 허위보고 및 증명서는 연대책임.
- ② 단, 비의도적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급여액 만으로 한정

다. 환수절차

- ① 부정사실에 대한 공단의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납부

2. 평균임금의 산정

가. 개설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재보험급여 즉,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산정한다.

나. 산정방법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즉,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text{평균임금} = \frac{\text{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text{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일수}}$$

- 3개월간의 총일수

소급하여 역월상 3개월로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아님

* 이전 3개월에서 금액과 기간이 제외되는 경우

- ① 업무상재해로 요양한 기간
-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③ 수습기간

(1) 평균임금의 산정 특례

- 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② 최저기준보장제도

-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장애 및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적용

(2) 보험급여의 최저임금액 보장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 기준 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 될 경우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38조 5항)

다. 평균임금의 증감

장기요양자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간 요양을 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어 손해를 보게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 ◆ 평균임금의 증감(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관련)(별표1)

① 동일직종 근로자가 있는 경우(장애·유족보상연금 등의 경우 제외)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이상 오르면 보험급여도 같은 비율만큼 인상해서 지급한다.
- 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 산정 이후의 통상임금변동율)

*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달의 다음달 평균 임금 산정부터 적용

*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

* 동일한 직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 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분

류에 의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류의 구분에 따를 수 있다.

- ② 장애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거나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
-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 : 업무상 재해 발생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 업무상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이후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전회의 평균임금액	×	2년전 보험연도의 7월1일부터 1년전 보험연도 6월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3년전 보험연도의 7월1일부터 2년전 보험연도 6월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월별 노동조사통계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하는 평균임금의 직전 평균임금을, 2년전 보험연도 및 3년전 보험연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연도를 말한다.

③ 증감절차

- '평균임금증감신청서'에 임금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

라. 기준임금제도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피재근로자에게 적용할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임금확인 등에 따르는 사업주와 피재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설(2000.7.11.)제도이다.

(1) 적용대상

- 폐업, 도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신고하는 경우

(2) 기준임금

- 징수 및 보상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 월급 723,000원과 시간급 3,200원(고용보험기준과 동일하다.)

3. 산재적용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

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6. 7. 30 95누13432)

4.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면제를 받는다.
 - 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
 - ②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면제(지급범위내)
 - ③ 자동차 보험배상시 손해배상 책임 면제(지급범위내)
 - ④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수령가능
 - ⑤ 근로자가 긴급 기타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된 부분 → 공단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 청구 가능

하나의 재해가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경우 쌍방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정하기 위함에 있다. 